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023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 1. 3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023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3호, 2022. 4. 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1. 개정 이유

그 간 화장품으로 관리되어 오지 않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소비자의 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화장품의 유형으로 신설 및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 중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가 필요한 화장품의 유형을 신설(안 제2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내용량이 50 mL(g)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화장품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화장품으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외음부 세정제’를 지정함

**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신설 및 두발용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구분(안 별표1)**

- 눈 화장용 제품류 중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과 해당 유형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 신설
- 두발용 제품류 중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로 함

**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영유아의 만 나이에서 “만” 삭제 (안 별표1)**

- ‘외음부 세정제’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함유 제품’ 및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

###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022호, 입법예고 2024. 1. 31. ~ 2024. 3. 12.)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개정령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4.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sunmilee@korea.kr
- 전화: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호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별표 1 제1호 다목 5) 외 음부 세정제 및 같은 호 라목 6)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ave)를 말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중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를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로 하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눈 화장용 제품류

- 1) 아이브로(eyebrow) 제품
- 2) 아이 라이너(eye liner)
- 3) 아이 섀도(eye shadow)
- 4) 마스크라(mascara)

-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 6)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ave)
- 7)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별표 1 제1호아목 7)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를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hair permanent wave)”로 하고, 제2호가목 5) 중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을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으로 하며, 같은 목 6) 다) 중 “만 3세”를 “3세”로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 가) 가급적 자가 사용을 자제할 것
- 나)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할 것
- 다)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눈과의 접촉을 피하고, 눈 또는 얼굴 등에 약액이 묻었을 때에는 즉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 등을 이용해 씻어낼 것
- 라) 특이체질, 생리 또는 출산 전후이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사용을 피할 것
- 마) 보관 시 소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고,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존하되, 색이 변하거나 침전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 바) 개봉한 제품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할 것(사용 중 공기유입이 차단되는 용기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2호나목 4) 중 “만 3세”를 “3세”로 하고, 같은 목 6) 중 “만 3세”를 “3세”로 하며, 같은 목 14) 중 “만 3세”를 “3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및 외음부 세정제의 용기·포장에 대한 기재·표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0000호)」의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 용기·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및 외음부 세정제의 용기·포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2조(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u> <u>상)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u> <u>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u> <u>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이란 별표 1</u> <u>제1호 다목 5) 외음부 세정제 및</u> <u>같은 호 라목 6) 속눈썹용 퍼머넨</u> <u>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u> <u>ave)를 말한다.</u></p>
<p><u>제2조 ~ 제4조 (생 략)</u></p>	<p><u>제3조 ~ 제5조 (현행 제2조부터 제</u> <u>4조까지와 같음)</u></p>